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 교육  
신입생 모집요강



YEJU INSTITUTE OF TECHNOLOGY

여주대학교

## 산업체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전형**

#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

### 1. 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는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교육의 기회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주대학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학위(졸업증서)를 취득하는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 2.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2,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교육부 예규 29호)과 2019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 3. 계열/학과 및 모집인원(야간)

계열	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교육장소(인원)
			본교	별도위탁	총인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상담과	3년	-	30	30	화랑부대 위탁교육장(30)
	호텔관광과	2년	20	-	20	본교 위탁교육장(20)
공업	항공정비과	2년	-	90	90	승리부대(15사단) 위탁교육장(20) 이기자부대(27사단) 위탁교육장(30) 육군항공학교 위탁교육장(20) 항공작전사령부 위탁교육장(20)
	국방장비과	2년	-	60	60	8군단 위탁교육장(30)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위탁교육장(30)
	자동차과	2년	20	90	110	본교 위탁교육장(20) 3기갑여단 위탁교육장(30) 2군단 위탁교육장(30) 7사단 위탁교육장(30)
	반도체시스템과	2년	-	30	30	SK하이닉스 위탁교육장(30)
	소프트웨어융합과	3년	30	30	60	본교 위탁교육장(30) SK하이닉스 위탁교육장(30)
	예체능	스포츠·경호과	2년	20	40	60
합 계			90	370	460	

※ 학과별 모집/등록인원이 학급편성 인원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 4. 전형방법

1. 전형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
  2. 모집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 ① 위탁교육 의뢰 인원이 많은 산업체
    - ② 현 직장 장기 근속자(공적 증명서 기준)
    - ③ 고교졸업년도가 오래된 재직자
- ※ 위 기준이 동일한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용함

##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2018. 11. 12(월) ~ 2019. 1. 11(금) (09:00 ~ 17:00)	접수처 : 본 대학 대학본부 4층 NCS학사지원처
합 격 자 발 표	2019. 1. 25(금)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조회 (별도 발송하지 않음)
합 격 자 등 록	2019. 1. 28(월) ~ 2. 1(금) (09:00 ~ 16:00)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우편 발송하지 않음)
총 원 모 집	2019. 2. 7(목) ~ 2. 28(목)	학과별 모집인원 미달 시 총원모집 실시

## 6.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체 합산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이며,** 대학 졸업시까지 직장인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19.3.1 입학일 기준)
2.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이상)에 직장가입경력 9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재직 자  
※ 입학일 기준('19. 3. 1)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경력 합산**
3.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 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9.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대학-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
4. 영농인·어업인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어업인 중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등록된 주 경영인, 주 경영인의 배우자, 주 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5. 4대 보험 미가입자 영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한 자 (위탁교육 가능 여부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 7. 산업체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8.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입학원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출력)
		재직(경력)사실증명서 (직업군인은 복무확인서)	1부	
		산업체위탁교육 서약서	1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2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추가 서류 (재직 증빙 서류)	일반 산업체	아래 ①~③ 중 1개만 제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③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현재 산업체와 이전 산업체의 보험가입 내용이 모두 기재된 서류) ※ 관련서류 발급방법 하단 참조
	영농· 어업인	영농인 : 농지원부 어업인 : 어업인 허가증명서	1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최초작성일자 기준 9개월이상)
	산업체 대표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관련서류 발급방법 하단 참조 (등록기준 9개월이상)
		소득금액 증명서 (최근1년)	1부	

※ 공적증명서 제출증명서류 인터넷 발급방법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제 출 서 류	발 급 기 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a href="http://www.nhis.or.kr">http://www.nhis.or.kr</a> )에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a href="http://www.nps.or.kr">http://www.nps.or.kr</a> )에서 발급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 <a href="https://www.ei.go.kr">https://www.ei.go.kr</a> )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홈텍스 홈페이지 (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에서 발급

## 9. 지원자 유의사항

1.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증명서로 확인**  
(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 여부 확인  
※ 기간 내 재직관련 공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2.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9.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3. 위탁생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  
- 위탁생이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내 다른 산업체로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가 가능**
4.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입학 후에도 합격취소 및 제적처리함
5.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휴학, 입학, 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라 운영합니다. 또한, 휴학 후 복학 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학이 불가함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인원이 미달되어 별도 학급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함
8. 합격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시에는 합격이 취소되어 접수된 다음 순위자에게 합격 및 등록에 관한 모든 권한이 부여됨
9.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10. 위탁교육생의 장학금 특전

1. 산업체(군부대) 계약 및 협약을 통하여 입학 시 30%~100% 입학금 감면
2. 원서대 및 전형료 면제
3. 재학시 등록금(수업료) 40%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 11.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1.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시홈페이지에서 입학포기 절차에 따라 입학포기원 접수 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등록금 환불 처리함  
(입학포기원 신청기간 : 2019. 2. 28(목)까지, 이후에는 자퇴 처리됨)
2. 자퇴처리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등록금 반환기준을 적용함

사유발생 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12. 입학상담 및 문의사항

### 가. 입학상담

학과명	담당교수	상담전화	학과 사무실	비고
사회복지상담과	이동선 교수	031-880-5314	031-880-5299	
호텔관광과	임소영 교수	031-880-5425	031-880-5248	
항공정비과	김정래 교수	031-880-5529	031-880-5277	
국방장비과	김지한 교수	031-880-5327	031-880-5277	
자동차과	최완목 교수	031-880-5434	031-880-5279	
반도체시스템과	김경섭 교수	031-880-5204	031-880-5229	
소프트웨어융합과	장성준 교수	031-880-5254	031-880-5199	
스포츠·경호과	김원식 교수	031-880-5350	031-880-5239	

### 나. 관련문의

구분	문의처	연락처
등록 및 납부안내	행정지원처 (대학본부 5층)	031-880-5453~4
장학 및 학자금 대출안내	학생지원처 (대학본부 3층)	031-880-5561
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NCS학사지원처 (대학본부 4층)	031-880-5553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ipsi.yit.ac.kr/> → **산업체위탁생 클릭**

주 소 : (1265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38번지 대학본부 4층 NCS학사지원처

(원서 및 각종 서식은 <http://ipsi.yit.ac.kr/> 입시홈페이지 / 산업체 위탁교육 / 자료실)

#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원서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여주대학교**

	수험번호	
위탁학급명 (부대명)		
지원학과		과

■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력	고등학교                   년   월   일   졸업(예정)												
	지역 검정고시           년   월   일   합격												
주소 (현거주지)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	-	-			
	E-mail						비상연락처						

■ 재직사항						
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업종	종업원수			직장전화번호		
부서명	담당업무			직책(계급)		
주소						
재직기간 (임관일자)	년   월   일 ~ 2019년 3월 01일 기준				년   개월	

\* 재직기간은 임관일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함.(2019년 3월 01일 기준).

상기 본인은 여주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주대학교 총장 귀하**

- 추가제출서류 (1개월이내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 복무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필수항목) : 지원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전문대학명, 졸업(예정)연도)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산업체 위탁 입학전형에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입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산업체 위탁 원서 접수 및 입학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입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산업체 위탁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교알리미 통계 자료 제공	이름, 생년월일, 출신고교 및 대학명, 모집단위명, 학제, 합격여부, 등록여부,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대학 지정은행	등록금 수납업무	이름, 학과명, 수험번호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명, 합격여부, 등록여부,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산업체 위탁 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이 직접(동의)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확인 :

(서명)

# 서 약 서

- 산업체명: \_\_\_\_\_
- 성 명: \_\_\_\_\_
- 입학 학과명: \_\_\_\_\_

상기 본인은 입학 후 학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됨을 유념하고, 또한 산업체의 신분변동 시 아래의 방침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입학 후부터 졸업 시까지 상기 산업체에 재직 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할 시에는 제적처리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산업체의 사정으로 퇴직 할 시(예: 구조조정 등)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취업을 하며, 재취업된 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제출 할 것입니다.
3. 또한 증빙서류 미 제출 및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탁계약 체결을 못할 시에는 제적처리 됨에 이의가 없습니다.
4. 위탁교육 의뢰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제적처리에 이의가 없습니다.
5. 지원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본 대학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작성일 :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여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발급번호 \_\_\_\_\_ 호

## 재직(경력)사실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주소				전화번호	
재직사항 (근무처 기재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직장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직장전화	- - (교환)		상시 종업원수	명	㉞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부서	부서명		증명서 발행자	㉞	전화번호	
첨부서류	1.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1부. 2.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부. 3. 고용보험자격취득확인서 1부. (3가지중 택 1)			경력구분 : 재직자( ) 퇴직자(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산업체(기관)명 :

대 표 : (직인)

여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 ※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작성 시 모든 란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고 필히 ■란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날인이 누락되면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무경력 및 종업원수가 허위일 경우에는 재학 중 제적처리 및 졸업 후라도 졸업을 취소함.

# 위탁교육계약서

학교보관용

여주대학교와 \_\_\_\_\_ 는 고등교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_\_\_\_\_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여주대학교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조 (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 ② 위탁의 분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별	분 야(학 과)	위 탁 생 수	비 고
2019학년도			

제 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한다.

제 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 ② 여주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및 여주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 5조 (위탁생의 학급 편성)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편성 또는, 여주대학교에 기 설치된 위탁교육 학과의 학급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할 수 있다.

제 6조 (교육과정의 편성)

-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여주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주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
- ③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주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 7조 (산업체의 시설 사용)

산업체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및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한다.

제 8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시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 (교육비 및 등록)

-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여주대학교의 학생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산업체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일괄 납부한다.

제 10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여주대학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11조 (위탁생 재직조치)

- ① 본인의 원에 따라 해당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 위탁교육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매학기 말에 대학에서 재직조치를 실시하면 산업체에서는 재직유무 및 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회신한다.
- ② 재직조치 결과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는 제적처리를 실시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 시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2조 (위탁생 제적기준)

-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다.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他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하다.
-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하다.
- ④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 교육과정 이수자(19.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제 13조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 본문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명시토록 한다.

제 14조 (위탁교육 협력위원회)

약정에 의거 협력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과 구성, 기능(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시행일) 본 계약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여주대학교 총 장 윤 준 호 (직인) 회사명( \_\_\_\_\_ )대표이사 (직인)

# 위탁교육계약서

산업체보관용

여주대학교와 \_\_\_\_\_ 는 고등교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_\_\_\_\_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여주대학교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조 (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 ② 위탁의 분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별	분 야(학 과)	위 탁 생 수	비 고
2019학년도			

제 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한다.

제 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 ② 여주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및 여주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 5조 (위탁생의 학급 편성)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편성 또는, 여주대학교에 기 설치된 학과의 학급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할 수 있다.

제 6조 (교육과정의 편성)

-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여주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주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
- ③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주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 7조 (산업체의 시설 사용)

산업체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및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한다.

제 8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시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 (교육비 및 등록)

-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여주대학교의 학생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산업체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위탁산업체의 책임 하에 일괄 납부한다.

제 10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여주대학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11조 (위탁생 재직조치)

- ① 본인의 원에 따라 해당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 위탁교육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매학기 말에 대학에서 재직조치를 실시하면 산업체에서는 재직유무 및 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회신한다.
- ② 재직조치 결과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는 제적처리를 실시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 시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2조 (위탁생 제적기준)

-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다.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他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하다.
-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하다.
- ④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 교육과정 이수자(19.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제 13조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 본문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명시토록 한다.

제 14조 (위탁교육 협력위원회)

약정에 의거 협력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과 구성, 기능(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시행일) 본 계약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여주대학교 총 장 윤 준 호 (직인) 회사명( \_\_\_\_\_ )대표이사 (직인)